

계룡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순회수리반 및 농기계부품센터(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순회수리반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기능) ①순회수리반은 수리정비, 부속품대체,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②대상지역은 리·통 자연부락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을 우선한다.

③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④순회수리반은 차량을 이용 마을단위 순회수리시 또는 센터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

제4조 (수리반 편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교관 1명(농업기계기능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자),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관리 한다.

제5조 (수리업무의 전담등) ①순회수리반 요원은 농업기계에 관한 교육, 순회수리 및 기타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②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때는 농업기계 수리요원(기능직, 농업기계 기능사 2급이상 자격이 있는 자)정원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순회전용차량) ①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제1항의 순회차량에는 별표1의 수리용 장비와 공구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고, 별표2와 같은 표지를 하여 농업기계 순회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정비기종) 순회 수리반이 수리 정비하는 농업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종 명	비 고
경운정지기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수확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방 제 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기 타	원동기(엔진, 전동기), 양수기, 파종기 등	

제8조 (수리용부품 비치 및 확보등) ①제7조의 농업기계수리용 부품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부품센터 또는 순회 수리차량 부품상자에 보관 활용한다.

②부품의 수요는 대리점, 수리점 및 농업기계보유농가 등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여 절품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품확보는 정부보급 기종으로 정밀도가 높은 신기종 부품위주로 확보되고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회귀성 부품을 실정에 맞게 확보한다.

⑤정부보급이 중단된 기종의 부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제9조 (부품대 및 수수료) ①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시장이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②당일 징수한 대금은 계류시 금고에 다음날 입금하여야 한다.

③수리가액 및 부품공급가액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은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 (순회수리계획의 수립) ①순회수리활동은 연간 40회 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하고 년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순회수리 계획에는 농업기계 기종별 보유현황 구입연도, 내구연한 및 수요 추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순회 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3.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 및 공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7호서식)

제12조 (사전홍보) ①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방송, 반상회보 및 각종 영농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②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지순회 수리대상지역을 순회수리일 1주일 전에 면·동장과 이·통장에게 통보하고 마을방송을 이용 사전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

제13조 (현장교육) ①순회 수리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②현장참여 농민에게 고장수리법과 관리요령을 지도한 다음 농민이 직접 수리 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수리능력을 배양한다.

제14조 (수리곤란기계) 현장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수리점에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 (협조체제유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대리점, 수리점은 물론 유관기관 및 농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순회수리 활동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제16조 (장비 등의 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가 고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계상)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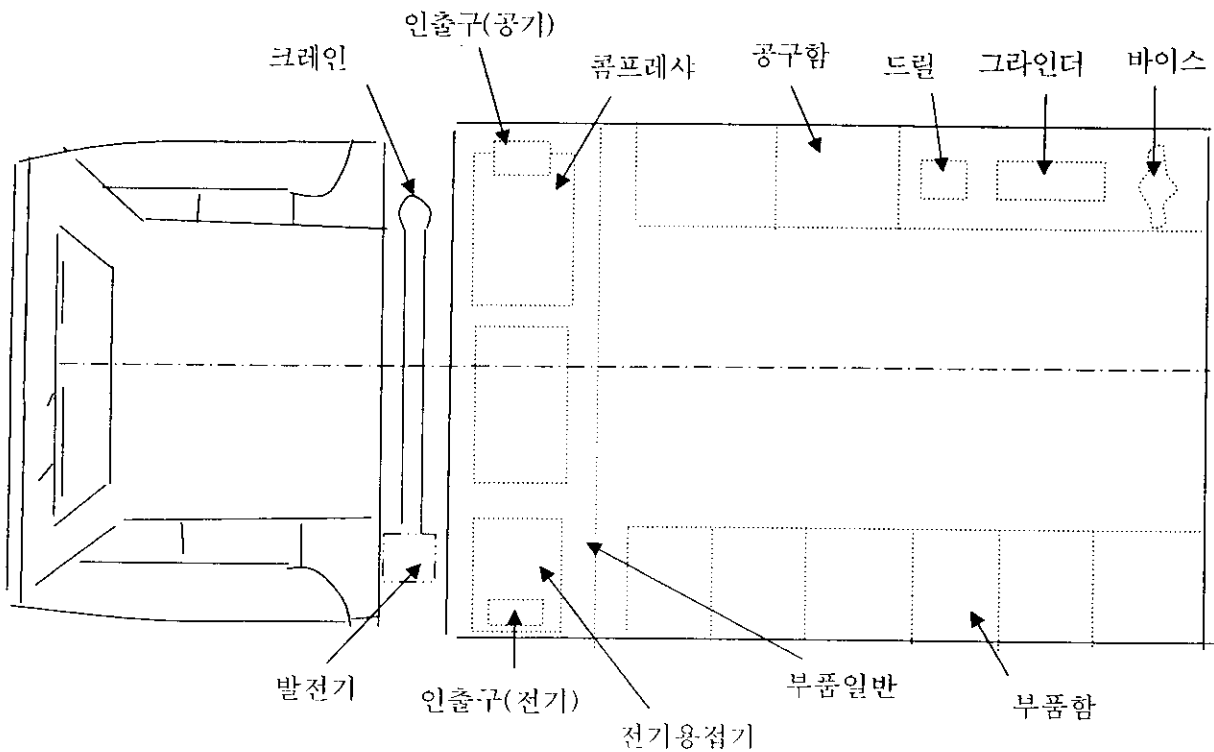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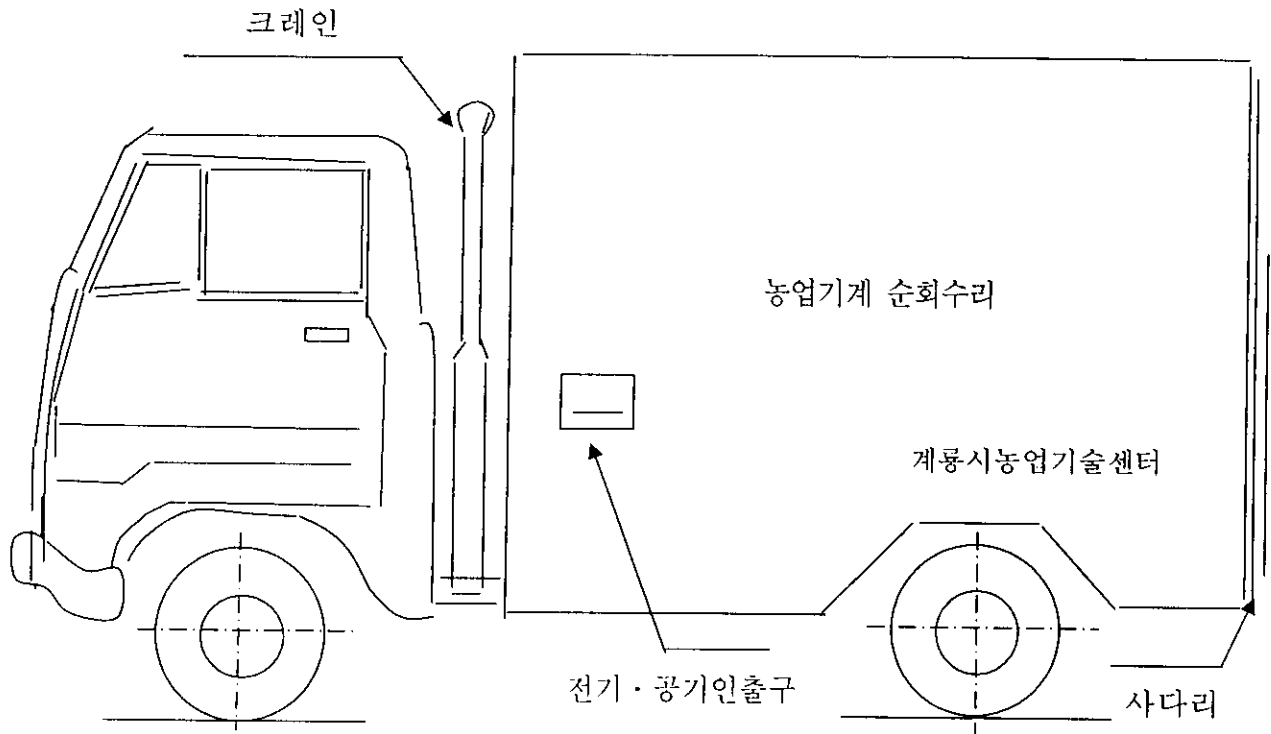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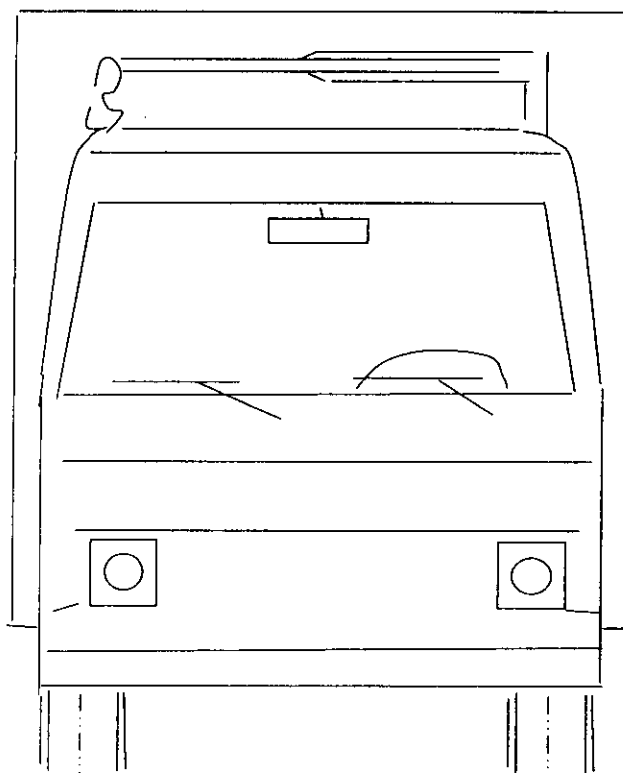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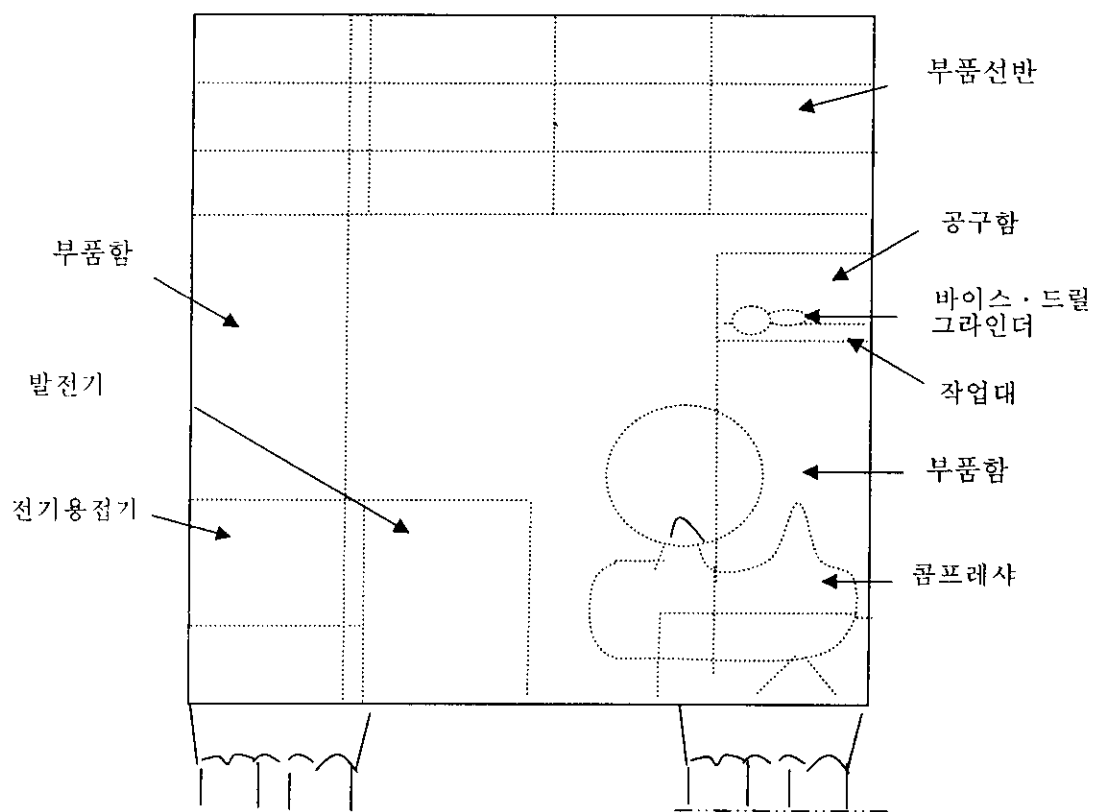
[별표1]

수리용장비 및 공구내역

구 분	내 역
장 비 (8종)	전기용접기(직류아크용접기), 분해용 풀러, 잭기(3ton), 콤프레샤 노즐테스터기, 그라인더, 바이스, 토인게이즈
공 구 (31종)	전기드릴, 수동식드릴, 줄(대·중·소), 쇄톱, 망치(대·중·소), 안전합대, 롱로스프라이어, 양철가위(대·중·소), 오프렌치(m/m inch), 스패너(m/m inch), 링스패너(m/m inch), 바이스프라이어 (-)(대·중·소) 드라이버(+) (대·중·소), 조절렌치(대·중·소), 소켓렌치(m/m inch)립퍼, 프라이어, 뺨치, 토오크렌치, 휠러게지, 버니얼캘리퍼스, 밸브리프트, 피스톤링 익스팬더, 프러스렌치(대· 중·소), 육각렌치 셀, 파이프렌치, 전기인두, 마이크로미터(외), 마이크로미터(내)

농업기계 순회수리차량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농업기계수리정비신청서

주 소 : 시 면·동 리

성 명 :

기 종 :

고장부위 또는 원인 :

상기 기종을 수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수리정비내역

수리정비부위	부품교환			소모품사용			금액
	품명	규격	수량	품명	규격	수량	

농업기계순회수리반운영기록부

년 월 일(요일)

결 재	담당자	담당	소장

수리장소 :

수리정비내용 :

구 분			계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바인더	원동기	미스트기	분무기		기타
												동력	인력	
실 적	계													
	수리													
	정비													
부 품	교환	중												
		개												
	금액													

[별지 제3호서식]

부 품 수 불 대 장

품 명 :

월 일	적 요	규 격	구 입 단 가	수 입	사 용	재 고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별지 제4호서식]

소 모 품 수 불 대 장

품 명 :

월 일	적 요	수 입	사 용	재 고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별지 제5호서식]

농 업 기 계 순 회 수 리 일 정

월		월		월	
일 자	장 소	일 자	장 소	일 자	장 소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수리장비 및 공구대장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구 입 가 격		비 고
				단 가	금 액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징수 및 입금영수원부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